

의안번호	2205437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 계 번호	24C4733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(세대별 인상속도 차등)할 경우,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6.7조원(경상가격)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분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연금보험료율 인상(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·제3조)	3.9	7.9	11.7	15.5	17.7	56.7	11.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참고로, 개정안에 따른 제도 적용 시,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 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9년과 11년 연기되고,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,671.6조원 감소¹⁾할 전망

[표 2]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

구 분	보험료율	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	적립금 소진연도	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
현 행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9%	2041년	2057년	-
개정안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13%까지 단계적 인상 - 1965~1974년생(2025년 기준 51~60세): 매년 1%p 인상(2028년부터 13% 적용) - 1975~1984년생(2025년 기준 41~50세): 매년 0.05%p 인상(2032년부터 13% 적용) - 1985~1994년생(2025년 기준 31~40세): 매년 0.03%p 인상(2036년부터 13% 적용) - 1995년 이후 출생(2025년 기준 30세 이하): 매년 0.025%p 인상(2040년부터 13% 적용)	2050년 (+9년)	2068년 (+11년)	-2,671.6조원 (2025년 불변가격)

주: 1.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(잠정치),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

2.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제도상 누적적자보다 감소한다는 의미로,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님

II. 재정수반요인

- 원칙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수입 증가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²⁾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조치를 재정수반요인으로 설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8조 (연금보험료의 부과·징수 등) 및 부칙 제2조·제3조	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※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·징수 등) 및 부칙 제2조·제3조	○	○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설정
- 다만,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부대의견에 [참고자료]로 제시

2)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‘재정지출의 순증가액’ 또는 ‘재정수입의 순감소액’이므로,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‘재정수입의 증가액’은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

-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(잠정치),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실적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

[표 3]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전망모형의 주요 변수

구 분		변수 개요
인구변수		·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의 2023년~2093년 추계결과(중위 가정)를 적용
거시경제변수	임금상승률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~2093년 명목임금상승률 잠정전망치
	물가상승률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~209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잠정전망치
	회사채금리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~2093년 AA-명목회사채금리(3년 만기) 잠정전망치
	경제활동참가율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~2093년 연도별·성별·연령구간별 잠정전망치
제도변수		· 국민연금 가입률, 지역가입자 비중, 납부예외자 비율, 지역가입자 징수율,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등 외생변수는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할 때 사용한 전망치 준용 · 그 외 제도변수는 과거 실적 추세와 각종 모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변수 적용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(세대별 인상속도 차등)할 경우, 연금보험료 수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6.7조원(경상가격)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분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연금보험료율 인상(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·제3조)	3.9	7.9	11.7	15.5	17.7	56.7	11.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제도 적용 시,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 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5년 연기되는 반면,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22.9조원 증가³⁾할 전망

[참고자료]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

구 분	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	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	적립금 소진연도	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
현 행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9%	2041년	2057년	-
개정안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13%까지 단계적 인상 - 1965~1974년생(2025년 기준 51~60세): 매년 1%p 인상(2028년부터 13% 적용) - 1975~1984년생(2025년 기준 41~50세): 매년 0.05%p 인상(2032년부터 13% 적용) - 1985~1994년생(2025년 기준 31~40세): 매년 0.03%p 인상(2036년부터 13% 적용) - 1995년 이후 출생(2025년 기준 30세 이하): 매년 0.025%p 인상((2040년부터 13% 적용)	2050년 (+9년)	2068년 (+11년)	-2,671.6조원 (2025년 불변가격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

3)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제도상 누적적자보다 감소한다는 의미로,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님